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제기 시험비행 소음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6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천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9.
3. 회부연월일 :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비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비행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기도 포함하여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 <u>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u> ----- -----. 가. 「 <u>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군용항공기</u> 나. 「 <u>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u>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¹⁾
- 그런데 군용비행장에서는 전투기 비행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KF-21과 같은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비행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시험평가 비행은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전투기와 동일한 기동을 하므로 소음 유발 수준도 전투기와 유사하나, 시험평가 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소음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군용항공기에 시험평가용 시제기도 포함함으로써 시제기의 시험평가로 인한 소음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무인항공기·비행선(飛行船)·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시제기 운용현황]

(단위 : 소티)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험비행 횟수	-	-	64	356	630

※ 사천공항(KF-21 시제기)

- 다만, 전투기 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양산 단계 이후 부터는 민간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며, 시제기의 시험비행은 전투기 양산 전 성능 측정을 위한 것으로 민간업체의 영리를 위한 사업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을 국가 예산으로 실시 함에 있어 피해를 가한 주체와 보상을 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²⁾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민간 업체가 주관하는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다른 무기체계와의 형평성 문제, 시험평가용 항공기에도 군용항공기와 동일한 의무(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훈련 제한 등)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 임.

2) 안흥시험장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무기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09